



# 농산물 포장업계에 대한 제언

## A Proposal on the Packaging of Agricultural Products

박근혜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은 생산자는 제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하고 도매시장의 효율화와 다양한 신 유통경로의 육성 등을 통하여 유통경로간 경쟁 촉진을 통해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농식품산업은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국민 식생활 및 영양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농식품 인증 및 표시제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식품 정책의 변화는 농산물 포장업계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포장재료비 절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제시가 필요

농산물 외부 포장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골판지상자는 1970년대 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도매시장 유통량 기준으로 연간 8억 개 이상이 사용되고 있으며, 플렉소인쇄방식에서 옵셋 합지방식의 칼라상자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상품성은 향상되었지만 상자의 강도가 필요이상으로 증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포장단위가 소포장화 되고 산지에서 소비지로 유통시 물류환경이 개선되었고,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유통시장간의 유통단계가 축소되고 파렛트 유통이 보편화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포장업계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에 의해 포장재를 공급하였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유통조건을 감안한 적정압축강도로 설계된 골판지상자를 제작 공급하여 포장자재비 절감에 따른



김 수 일

김수일포장개발연구소 소장

농업인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포장업체의 능동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 **신유통에 대비한 택배용 포장기법 및 포장재 개발이 필요**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신유통 채널로 “로컬푸드 판매장과 꾸러미 판매사업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판매하는 사업이고 “꾸러미”는 지역에서 생산된 여러종류의 농산물 세트를 택배배송을 이용하여 타지역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택배를 이용한 판매가 농업현장에서는 보편화 되고 있으나 택배유통 중 파손에 따른 클레임발생 억제를 위한 포장기술 및 포장재 개발은 초보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사용중인 택배포장재는 도매시장 유통에 최적화된 포장재일지는 모르지만 택배용 포장재로는 적합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농산물을 안전하게 택배유통이 가능하도록 품목별 호흡특성과 택배유통중 파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완충포장기법이 적용되고, 포장작업시간을 단축하면서도 포장재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택배용 포장재 개발이 필요하다.

### **농산물의 신선도 연장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

가공식품과는 달리 농산물은 수확 후에도 호흡을 지속하며 유통 중 포장방법에 따라 신선

도 저하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또한 품목마다 호흡특성이 달라 맞춤형으로 포장설계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였다. 특히 농산물의 소포장화로 포장재 시장은 엄청난 양적확대가 있었지만 품목별 신선도 연장기술의 발전속도는 느리기만 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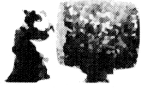
가공식품의 경우 생산자(대기업)가 주체가 되어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포장기술 개발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농산물의 신선도 연장기술 개발은 생산자의 영세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포장재 공급업체의 기술 개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다.

최근들어 유통채널이 다양화 되고 생산자의 규모화가 추진되면서 신선도 연장이 가능한 기능성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포장재 공급 협력업체의 선택기준이 단가 경쟁력이 아닌 기술경쟁력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신선도 연장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 확충과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 **개정된 포장재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 확보가 필요**

포장재와 관련된 법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업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분야는 식품위생법(표기사항 및 포장재 안전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대포장 및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제조물 책임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관련 포장재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안전”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가공식품의 표기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대기업과는 달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농가에서 표기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결국 디자인 개발업체와 포장재 공급업체에 표기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대포장과 관련한 문제점은 1차 농산물이 2013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대상에 포함되었다. 종이 칸막이에 대한 공간비율 인정기준이 30%에서 25%로 축소된 점, 계량도구를 중

합제품 구성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기준이 2011년 1월 1일에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한 실정에서 제작된 포장재에 대한 사용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기사항 위반 및 과대포장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서 과태료 납부 통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농가 입장에서는 “디자인 개발업체와 포장재 제작업체를 믿고 맡겼는데 관련 법규에 맞지 않게 포장재를 공급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련된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포장재를 개발 및 공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포장관련 법규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까지도 전문지식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K]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